

새롭고 따뜻한 상생의 동반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전화 : 02)3456-0000 / FAX : 02)6499-2434

문서번호 : 502-2117159

시행일자 : 2021.08.18.

수 신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참 조 : 장애인복지과 박선주 주무관님 귀하

제 목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의件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귀 기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대상자 선정 후 **[2021.09.08.(수) 12시]** 까지 그 명단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3. 기관추천 대상자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분	입주자모집 공고	특별공급 신청일	당첨자 동·호수 발표일	비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2021.09.02.(목)	2021.09.13.(월)	2021.09.29.(수)	일정 변경 시 별도통보

※ 상기 일정은 예정 사항을 알려드리며, 분양승인 일정 및 접수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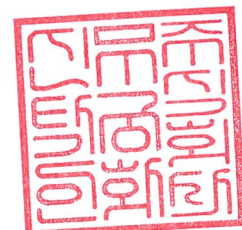
4. 인천시청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분	주택형(㎡)	60A	60B	69	84
장애인 특별공급 (인천시청)	배정세대	0	0	1	0
	예비	0	0	1	0

* 상기 배정세대에 따른 추천 및 예비 추천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불 임 : 1.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 공문 회신 : 김용찬 과장(kyc8754@daum.net) 및 (주)무궁화신탁으로 회신
3. 건본주택 Tel : 031-294-1200 /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co.kr>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 준 명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고택지개발지구 C6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7층 ~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총 10세대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자	참고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1.09.02.(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 2021.09.02.(목)
사이버 견본주택 Open		2021.09.03.(금)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특별공급 신청일	인터넷 청약	2021.09.13.(월) 08:00~17:30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2021.09.13.(월) 10:00~14:00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한 자에 한함
당첨자 발표일		2021.09.29.(수)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계약 체결일		2021.10.12.(화) ~ 10.16.(토)	10:00 ~ 16:00

※ 상기 일정은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개요

(단위 :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60.9700	33	3	3	7	1	5	19	14	2
60.9000	22	2	2	4	-	3	11	11	2
69.9200	52	5	5	10	2	8	30	22	4
84.5600	104	-	-	-	-	-	-	104	8
소계	211	10	10	21	3	16	60	151	16

■ 배정 세대수

구 분		배정 세대수					예비 배정 세대수				
		60A	60B	69	84	소계	60A	60B	69	84	소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	2	1	-	1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1	-	-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	1	1	-	-	-	1
	중소기업근로자	1	1	1	-	3	1	1	1	-	3
	장애인	서울특별시	1	-	-	1	-	1	-	-	1
		경기도	-	1	-	1	-	-	1	-	1
		인천광역시	-	1	-	1	-	-	1	-	1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9.02.예정)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 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에서 당사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입주자 저축 요건 의무 없음.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의거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간내에 견본주택으로 문의 후 접수 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문의전화 및 오시는 길 안내

견본주택 약도	공급 대상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도 현장: 광교택지개발지구 C6 BL 견본주택: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번지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오피스텔 1F)	<table> <tr> <th>해당타입(전용)</th><th>총 세대수</th></tr> <tr> <td>60A</td><td>33</td></tr> <tr> <td>60B</td><td>22</td></tr> <tr> <td>69</td><td>52</td></tr> <tr> <td>84</td><td>104</td></tr> <tr> <td>소계</td><td>211</td></tr> </table> ※ 상기 주택형 및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타입(전용)	총 세대수	60A	33	60B	22	69	52	84	104	소계	211
해당타입(전용)	총 세대수												
60A	33												
60B	22												
69	52												
84	104												
소계	211												

● 대표번호 : 031-294-1200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홈페이지 주소 : www.hillstate.co.kr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 (추천양식)

주택형	구분	시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예시 60A	당첨예정자	수원시	홍길동	123456-1234567	010-1234-5678
	예비당첨자	수원시	고길동	234567-2345678	010-2345-6789
60B	당첨예정자				
	예비당첨자				
69	당첨예정자				
	예비당첨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당첨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 시)
- ※ 2021.09.08.(수) 12시까지 기관추천 대상자의 명단 회신을 요청 드리며, 기간 내 미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에서 기관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에 마감시간을 준수하여 등록(미등록 시 청약불가)해야 하므로 회신 요청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